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207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박희승
전용기 · 이성윤 · 안호영
안도걸 · 이정문 · 양부남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3).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7조의4).
- 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8조제1항).
- 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58조의3).
- 마.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함(안 제60조).
- 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안 부칙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57조의4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p> <p>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6년</u>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u>2026년</u>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p> <p>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 <p>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2031년----- -----.</p> <p>④ ----- ----- ----- ----- ----- <u>2031년</u>----- -----. ----- ----- ----- -----.</p> <p>⑤ ----- ----- -----</p> |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생략)

④ (생략)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

1의2. -----

-----2031년-----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

-----2031년-----

월 31일까지 적용한다.

-----.